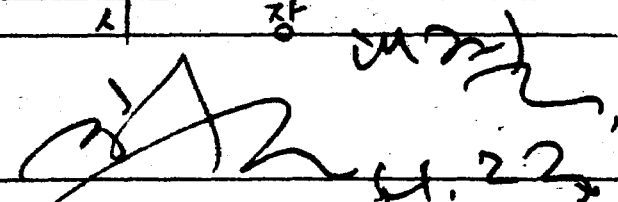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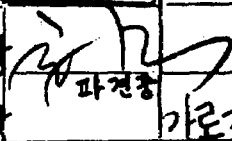
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계415-	(계획번호 75-6593)	전 권 규 정 조 항 전 권 규 정 조 항
처리기간	60°	시	장
시행일자	77. 4.		
보존년한			

보조기관	제2부시장	전	준						
	도시정비부장			법무담당관 업무심사실					
	도시계획과장								
기안책임자	정 광훈	77. 4.	정 성원						

경수참	유신조	각안참조	발신	공계	
-----	-----	------	----	----	---

계 목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제 102호

<제1안> 내부결재

1. 지하철 부부장으로 부터 지하철 차량기지 확보에 따라 인근주민의 15m 도로가 차단 되므로 민원이 야기 되어 지하철 배선 계획 일부조정하여 민원 해결코저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41호(77. 3. 16)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시행코저 합니다.

<제2안> 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.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.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41호(77. 3. 16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.

. . . 조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. . .

시민 봉사식에 비추하여 두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

보안	공권안심사	1977. 4. 23	제 126 호
심사	자법제계장	법무관	
주	215호		

1977. 4.

서울 특별 시장

가.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주사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3		6m	195m	용답동37	용답동28-1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제3안.

수신: 건설부장관

발신: 시장

제목: 동 건.

1.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 (도로)을 별첨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얏기 관계 도서 첨부 보고합니다.

첨부: 고시문사본 및 관계 도면 1부.

제4안.

수신: 문화공보실장

발신: 시장

제목: 시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시보에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: 고시

나. 게재내용: 별첨 고시문사본.

다. 고시구분: 도시계획법 제 13조.

첨부: 고시문사본 1매.

제5안.

수신: 성동구청장

제목: 종 건

1. 귀구 판내 도시계획사항이 별첨 고시문사본과 같이 결정 되었기 통보하오니 관계 도면 정리하여 도시 계획 업무에

3

착오 없도록 하기 바랍.

첨부: 과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매.

제 6 안

수신: 지하철 본부장

제목: 동 건

1. 지공 415-327(77.2.9) 의 관련 입니라

2. 위래호로 요청하신 지하철 차량기지에 대하여

별첨 과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과시 되었기 통보하시 참조 하기 바랍
니라.

첨부: 과시문사본 및 도면각 1매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각 1 부 : 끝